

2021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일반 / 학사

- ※ 정원 내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11월에 공지 예정입니다.
- ※ 11월 공지에 다소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최종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 일반편입학 / 학사편입학

1. 전형일정	3
2. 모집학과 및 인원	3
3. 지원자격	3
4. 시험과목 및 배점	5
5. 전형방법	6
6. 제출서류	6
7. 전형료	7
8. 지원자 유의사항	7
9.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7
10. 합격자등록, 등록금환불 및 미등록충원	8
※ 재외국민 확인 추가 제출서류	8
※ 농·어촌 지역학생 확인 추가 제출서류	8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확인 제출서류	8
※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9

1. 전형일정

구 분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비 고
원 서 접 수	2020. 12. 28.(월) 10:00 ~ 31.(목) 17:00		http://www.uwayapply.com
서 류 제 출	2020. 12. 28.(월) 10:00 ~ 2021. 1. 5.(화) 17:00		직접 및 우편 제출
예 비 소 집	2021. 1. 14.(목) 09:30		교회음악학과 연주실
필 답 고 사	2021. 1. 14.(목) 10:00	13:00	고사 당일 안내
면 접 고 사	2021. 1. 14.(목) 필답고사 후		
실 기 고 사	-		
합격자 발표	2021. 2. 2.(화) 10:00		본교 홈페이지
최 초 등 록	2021. 2. 3.(수) ~ 5.(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추가합격자 발표/등록	1차 : 2021. 2. 8.(월) ~ 10.(수) 최종 등록 : 2021. 2. 19.(금)		

2.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모 집 인 원			
	정원 내	정원 외		
	일반편입	학사편입	입학정원 비제한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신 학 과		1명	(0)명	(0)명
기독교교육과		1명	(0)명	(0)명
교회음악학과		1명	(0)명	(0)명
계		3명	(0)명	(0)명

※ 정원 내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11월에 공지 예정임

3. 지원자격

가. 일반편입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을 이수한 사람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학력인정(예정)자
- 5) 외국대학(해당국 소재)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하며, 출신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사람
- 6) 본교 재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다.
- 7) 신학과, 기독교교육과는 전적대학에서 전공한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교회음악학과 지원자는 동일계열 음악학부(과)를 수학한 사람에 한함.

나.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21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다. 농·어촌 지역학생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사람(추가서류 확인)

- 1) 신입학 당시 농·어촌지역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
- 2) 편입학 허가학년도 기준으로 당초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모집단위별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 중 직전 학년도에 제적된 인원이 없는 경우 모집이 제한됨

라.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추가서류 확인)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사람(추가서류 확인)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2) 편입학 허가학년도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모집단위별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 중 직전 학기 및 직전 학년도에 제적된 인원이 없는 경우 모집이 제한됨

바.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을 이수한 사람(추가서류 확인)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사. 공통사항

- 1) 개신교 세례교인 또는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식을 한 사람
(2020년 12월에 세례 또는 입교식을 한 사람은 세례(입교)증명서 제출 필)
- 2)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외국대학(해당국 소재)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하며, 출신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 지원 시 유의사항

- 1) 본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입학한 후 1, 2학년 전필(교직, 필선) 과목 이수로 인하여 수업학기가 4학기를 초과할 수 있다.
- 2) 국내대학의 경우 전적 대학(교) 성적표에 평균평점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어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 담당자 확인과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 “다” ~ “바” 항의 지원자격은 해당 대상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됨

5. 전형방법

- 가. 학과별로 일괄합산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나. 면접고사에 결석한 사람 및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다. 입학지원자가 석차 순위로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성적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입학사정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불합격시킬 수 있다.
- 라. 신학과, 기독교교육과의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 성경 100점, 영어 100점, 면접 40점 총 2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국내학생과의 비교를 위해 3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환산방법의 예 : 성적 240(성경 100 + 영어 100 + 면접 40) X 1.25 = 300점)
- 마. 교회음악학과의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 음악통론 100점, 실기 300점, 면접 등 총 4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국내학생과의 비교를 위해 4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환산방법의 예 : 성적 400(음악통론 100 + 실기 300) X 1.125 = 450점)
- 바. 그 외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입학사정원칙에 따른다.

6. 제출서류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는 **2020년 1월 5일(화) 17시까지** 본 대학교 교학실(대학)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발송 시 **2020년 1월 5일(화) 소인까지 접수**). ※ **정원 외 지원자는 추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방문제출 시 유의할 점 : 근무시간 / 오전 9:00~17:00, 토요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음)

(주소 : ☎ 04965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편입학담당자 앞)

구분	제출서류
국내대학 출신자	1.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본교양식) - 2019년 12월에 세례 또는 입교식을 한 사람은 세례(입교)증명서 제출 필 2. 자기소개서(온라인 입력) 3.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적증명서, 학력인정(예정)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평균평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 1부 ※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최종학기까지 환산한 점수가 적용되며, 증명서는 접수일을 기준하여 역산 1개월 전까지 발급된 것에 한함. 5. 공인영어성적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신학과, 기독교교육과만 해당)
외국대학 출신자	1.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본교 양식) - 2019년 12월에 세례 또는 입교식을 한 사람은 세례(입교)증명서 제출 필 2. 자기소개서(온라인 입력) 3.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적증명서, 학력인정(예정)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 출신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에 관한 자료 제출 ※ 외국 증명서(3, 4번)는 한글로 번역하여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것(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5. 공인영어성적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신학과, 기독교교육과만 해당)

7. 전 형 료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80,000원	80,000원	150,000원

가. 인터넷 접수 수수료 : 5,000원 (학교 부담)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5,000원만 결재하고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편입학 지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나. 지원자의 자격기준일은 접수마감일로 한다.

다. 전적교에서 징계로 인하여 제적(성행불량 제적)처리된 사람은 지원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적증명서에 제적사유가 기재(수기 기재 시 담당자 확인 필요)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른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전적 대학 학적에 대하여 자퇴 처리하여야 하며, 추후 학력조회 결과 이중학적으로 인하여 입학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수험생은 예비소집 시간에 참석하여 수험생안내를 받고, 본인의 면접 고사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바.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이라도 부정한 방법 또는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학력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미달임이 밝혀질 때에는 언제라도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사. 고사장에서는 휴대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아. 기타 사항은 02)450-0748 또는 홈페이지(<http://www.puts.ac.kr>) 입학상담 게시판으로 문의

9.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가. 접수된 입학원서, 전형관련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입학원서의 모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기재 사항이 잘못되어 불이익을 당하여도 본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	--

라. 전자결제

※ 전자결제가 종료된 후에는 원서항목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특히 입학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가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전자결제를 위해서 화면에 나타난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2) 전자결제는 본인 및 보호자의 통장이나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한다.

4) 전자결제 시 은행 망을 통하여 결제를 받아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5) 결제 중 창이 닫히거나 시스템 종료 등으로 인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정상적으로 종료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6) 원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전자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마. 수험표 출력

1) 전자결제 후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한다.

2)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원서접수 창에서 재 출력할 수 있다.

10. 합격자 등록, 등록금 환불 및 미등록 충원

- 가.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일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합격자 중 등록의사가 없는 사람은 교학실에 준비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포기각서, 본교 등록금납부영수증, 신분증 사본을 **2021년 2월 5일(금) 17:00**까지 제출한다.
 라. 미등록충원은 총점 순위별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개별 통지한다.
 마. 추가합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2021년 2월 19일(금) 17:00**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바. 전형료 환불

구 분	환 불 금 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30% 공제 후 환불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후부터 면접/실기 고사일 전 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50% 공제 후 환불
면접/실기 고사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1)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 3) 부득이한 사유 : 고사 당일 천재 또는 지변, 대학의 과실, 수험자의 질병 또는 사고
 ※ 단, 수험자의 질병 또는 사고는 입증서류(입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외국민 확인 추가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전적대학이 발급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확인서(출신 대학교 발행)

※ 농·어촌 지역학생 확인 추가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전적대학이 발급한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전형 입학 확인서(출신 대학교 발행)

※ 특수교육대상자 확인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2. 진단서 : 해당 장애부분의 의사 진단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것

※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것만 인정.
-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공증(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 필

구 분	해외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녀	기타재외국민	본인만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결혼이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이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입학원서(인터넷 작성)	●	●	●	●	●	●	●	●
출석교회 담임목사추천서(본교 양식)	●	●	●	●	●	●	●	●
자기소개서(본교 양식)	●	●	●	●	●	●	●	●
제출서류목록표(본교 양식)	●	●	●	●	●	●	●	
학력사항기록표(본교 양식)	●	●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	●	●	●	●	●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	●	●	●	●	●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	●	●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부, 모)	●	●	●	●	● (보호자)			
전 가족 주민등록말소 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해당자)	● (해당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해외거주사실확인서)(학생, 부, 모)	●	●	●		● 학생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기간 명시)		●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 증명서(현지 자영업자)			●					
사실증명발급 신청 위임장(학생, 부, 모)	●	●	●	●	● 학생	● 학생		
여권 사본(학생, 부, 모)	●	●	●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신분증 사본(원본 대조)					●	●		
재직사실 조회동의서		●						
선교파견 사실 확인서(해외 선교활동 자녀)			●					
외국국적 증명서(외국인등록증, 시민권 사본)				● 학생		● 학생	● 학생,부모	
영주권 사본(학생,부,모)	●							
외국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하며, 앞·뒷면 모두 복사하여 제출)				● 학생		● 학생	● 학생,부모	
*재정능력 입증서류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 확인서								●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에 중요한 사항을 위·변조,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합격자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상이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유학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외국인 해당)

- 가. 재정보증인의 학비부담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가족(부 또는 모)이어야 함
- 나.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 은행 등 예금 잔고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상 예치)
- 다.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라. 재정보증인의 자산증명서
- 마. 지원자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서약서
- 바. 재정보증인(부 또는 모)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제출, 재정보증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 표준입학허가서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발급 가능